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후보자에 국민추천제 도입〉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후보자의 국민추천제 도입 (안 제28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8. 8.

다. 회 부 일 : 2025. 8.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후보자에 국민추천제 도입 (안 제2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임원후보자 국민추천</u> - 정부는 인재 발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음
○ <u>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u> <신 설>	○ <u>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u> - <u>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을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음</u>

현행법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후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원후
보자의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갖춘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에 있어 그 후보자를 국민
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임.

국민추천제²⁾란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현행 국민추천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재를 추천 받아 등록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
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내 주요
직위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직이나 전문가 후보자 등 임명시 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음. 추천직위의 경우 정무직, 개방형직위,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
·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
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
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참고자료 참조

공공기관장·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분되며,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866명이 추천되었으며, 국민추천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총 24,231명이 추천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민추천 접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705	934	1,385	1,503	2,619	2,979	2,997	3,380	3,863	3,866	24,231
일평균	2.4	2.6	3.8	4.1	7.2	8.1	8.2	9.3	10.6	10.6	6.8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에 있어서 이러한 국민추천제 도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대하여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원 임명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낙하산 논란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도 시행령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하여 폭넓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DB 활용 등을 통한 추천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낮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실제 현행법 시행령³⁾에서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인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

넷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⁴⁾에서는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국민추천제도를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국민추천제도가 폭넓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국민추천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그 임명에 있어 투명성·공정성·민주성 제고라는 국민추천제도의 취지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인사혁신처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9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 학계·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
3.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임원후보자 국민추천)</u> <u>정부는 인재 발굴을 위하여 필</u> <u>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업·준</u> <u>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u> <u>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u> <u>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u> <u>수 있다.</u>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임원추천위원회는 제28조의</u> <u>2에 따른 국민추천을 통하여</u> <u>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u> <u>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u> <u>있다.</u>

문 의 처

02)6788-5157

참고

국민추천제 개요

□ 목적 및 대상

- **(목적)** 참신한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분야별 전문가·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여 국가인재DB에 등재('15년~)
- **(대상)**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지식·기술·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 타인은 물론 본인 추천도 가능

□ 추천 방법

- **(전문분야별)** 교육, 외교·통일, 법무·사법·인권, 과학기술, 해양·수산, 농림·축산 등 31개 분야
- **(직위별)** 정무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 홈페이지(www.hrd.db.go.kr/OpenRecommend)를 통한 온라인 추천 또는 e-메일 팩스 및 우편 추천

□ 접수 및 활용

- **(접수/등록)** [접수]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재를 추천받아, [등록]수룩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DB에 수록·관리
- **(활용)**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 內 주요 직위 및 각종 위원회 위원 후보자, 시험위원 등으로 추천하는데 활용

□ 홍보 현황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e-뉴스레터(매월)	경품이벤트	전문단체 네트워크(반도체학회 등)